

懸案分析 93-3

主要國家의 盜聽防止法制

1993. 7.

연구자 : 박 영 도(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 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目 次

I. 머리말 3

II. 主要國家의 立法例 4

1. 美 國 4

2. 英 國 9

3. 獨 逸 12

4. 프랑스 14

〈附 錄〉 여·야당의 通信秘密保護法案의 主要內容 比較

主要國家의 盜聽防止法制

I. 머리말

일반적으로 盜聽이란 좁은 의미로는 公開를 豫期하지 않은 개인간의 會話를 당사자의 同意없이 은밀히 聽取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外部에서의 會話의 청취나 會話當事者의 一方이 승낙한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搜查方法으로서의 盜聽은 그 態樣에 따라 ①전화의 送話者와 受信者를 연결하는 전기적 회로에 機械裝置를 삽입하여 通話내용을 청취하는 방법(wiretapping), ②電子裝置를 사용하여 외부로 부터 會話를 청취하는 방법(bugging, electronic eavesdropping), ③대화자의 一方에게 초소형무선송신기를 은밀히 부착하여 嫌疑者와 대화시켜 그 내용을 無線受信器로 청취하는 방법 등 세가지 類型이 있다.

이러한 盜聽은 그 자체로서 通信의 自由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다른 基本權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수반하기 쉬우며 根源的으로는 人格權에 대한 危害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신매체로서의 電話普及이 오늘날 크게 보편화됨에 따라 電話盜聽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나아가 電子技術의 급속한 발달은 有線盜聽 뿐만 아니라 無線盜聽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盜聽에 관한 대처방식도 종래의 法理에서 벗어나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電子盜聽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1 어쨌든 外國에서도 盜聽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通信

의 不可侵 또는 刑事訴訟法上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라는 連關에서 解釋論理로서 발전시켜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盜聽의 심각성을 個別立法으로 대처하는 方式을 취하고 있어서 새로운 局面이 전개되고 있는 狀況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盜聽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8년 당시 民正黨 소속 일부의원들의 발의로 「通信秘密의 保護에 관한 法律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處理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지난 6월 15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盜聽防止法」의 制定에 합의를 함으로써 法案의 내용과 앞으로의 立法過程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야당인 民主黨은 이미 도청과 우편검열금지를 골자로 하는 「通信秘密保護法案」을 國會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여당인 民自黨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개회중인 제162회 臨時國會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與野가 법안을 審議中에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盜聽防止法의 제정에 즈음하여 앞으로의 運用 및 盜聽에 관한 法理構成에 도움을 주고자 이미 盜聽防止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美國·英國·獨逸·프랑스 등의 立法例를 살펴본다.

II. 主要國家의 立法例

1. 美 國

- 1) 자세한 내용은 權寧尙, 「憲法上 盜聽의 法理」, 現代公法學의 諸問題(尤堂 尹世昌博士停年記念論文集), 1983 博英社, 538-549面 參照.

美國에 있어서 盜聽은 修正憲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押收·搜索에 해당하며, 프라이버시의 侵害가 된다.²⁾ 따라서 盜聽은 이 修正憲法 제4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美國에 있어서 盜聽을 규제한 법률로서는 「聯邦通信法」이 그 최초이다. 동 法律 제805조에서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電話盜聽을 금지하였으나 1967년의 聯邦大法院의 판결에서³⁾ ①犯罪에 관한 情報을 전달하기 위하여 電話가 이용되거나 ②盜聽의 목적이 위법한 내용의 通話에 한정되고 그 범위와 기간이 明確한 경우 ③盜聽을 피고인의 會話에 한정한다는 최대의 注意가 할애되고 ④下級判事가 도청을 허가하는 範圍, 필요성과 상당성, 그에 수반하는 侵害의 明確性을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등 일정한 엄격한 要件아래 電話盜聽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同 法律은 현실을 규제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8년에 제정된 「綜合犯罪防止 및 街頭安全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에서 새로이 盜聽을 규제하게 되었다. 同 法律에서 盜聽에 관한 規定은 제119장의 「有線·電子通信 및 會話盜聽(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⁴⁾ 이하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修正憲法 제4조 「불합리한 搜索과 押收到에 대하여 인민의 身體·家宅·書類 및 財産을 보장받는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令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지지되는 眞實이라고 믿을 만한 原因에 기하여 발할 수 있고 특히 搜索할 장소와 逮捕·押收할 사람 또는 물품을 記載하여야 한다」.
- 3)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74 (1967).
- 4) 동 규정은 1986년 및 1988년에 그 내용이 대폭 補完되면서 전면개정되었다.

항 목	조 문	내 용
도청의 정의	§2511(1)	전자적, 기계적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유선통신 또는 회화의 내용을 청취하는 것
도청의 허가	§2518(3)	법관은 ①어떤 자가 죄를 범하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도청이외의 수사방법을 시도하여 실패한 때 또는 시도하여도 실패할 위험이 큰 것을 시사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③도청의 대상이 되는 유선통신 또는 회화가 행해지는 장소와 설비가 범죄를 위해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되려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인물에 의해 임대되어 그 이름으로 등록되거나 그 자가 통상 사용하는 것임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청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대상범죄	§2516(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법위반, 핵시설 및 핵연료에 관련된 사보타지, 스파이, 반역, 폭동, 악의적 위해, 선박파괴, 해적행위 2. 노동조합에 대한 대부·지불규제위반, 살인, 유괴, 강도, 공갈범죄 3. 공무원 또는 증인의 수뢰, 운동경기에서 수뢰, 도박에 관한 정보 전달, 공무원·배심원 또는 증인의 매수 또는 상해, 범죄수사방해, 대통령 암살, 유괴 또는 습격, 협박 또는 폭력에 의한 업무방해, 무허가업자에 의뢰하여 행하는 주간 및 국외여행 또는 수송, 청부살인, 어린

항 목	조 문	내 용
		<p>이에 대한 성추행, 인질행위, 주간수송중의 재물절도, 은급 또는 후생연금의 횡령, 장물의 주간수송, 불법적인 폭발물사용, 탈출, 접근장치를 사용한 활동과 횡령, 벌금미납도주, 증인재배치 및 지원, 항공기파괴, 비리조직에 대한 협박과 폭력, 연방공무원에 대한 협박 및 보복, 핵시설파괴, 우편물횡령, 의회·내각 또는 대법원요인암살, 납치 및 폭행, 핵물질과 관련한 금지행위위반, 자동차에 대한 파괴, 열차전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화폐위조관련 범죄 5. 마리화나, 마약 기타 위험한 약물의 제조·수입·수령·은닉·구입·구매 기타 취급에 관한 범죄 6. 폭리신용판매에 관한 범죄 7. 화폐등 통화와 관련한 범죄 8. 도청 및 도청장치에 대한 중죄위반 9. 외설행위 10. 천연가스송유관파괴, 항공기납치 11. 무기수출통제법위반 행위 12. 법정탈주자보호 13. 법정탈주혐의행위 14. 소화기와 관련한 중죄위반 15. 내국세법에 위반한 범죄
	§2516(1)	<p>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모행위 또는 조직범죄의 공모행위에 대해 긴급히 회화를 도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도청추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전허가가 없더라도 도청할 수 있다.</p>

항 목	조 문	내 용
위반에 대한 제재	§2512(1)	허가없이 도청을 행한 자, 도청에 의해 얻은 자료를 공개 또는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1만달러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구금형 또는 병과
도청내용의 처리	§2517(1)~(3)	도청에 의해 얻은 사실은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다른 수사관에게 공개하거나 증거로서 이용하고 또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공개할 수 있다.
기 타	§2519(3)	합중국연방법원 사무국장은 매년4월, 전년에 발부된 도청허가건수, 발부되지않은 건수, 도청에 소요된 비용등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18(4)	수사기관이 법관에게 도청허가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선서 또는 확약상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통신이 도청되는 자의 성명 ②도청되는 통신의 형식에 대한 특별한 설명 및 관련하는 특정범죄에 대한 설명 ③도청의 대상이 되는 통신이 행해지는 설비와 장소의 소재지 및 성질 ④도청이 허가된 기관명 및 신청을 허가한 자의 성명 ⑤도청이 인정되는 기간 및 통신이 취득된 경우 자동적으로 도청이 종료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기재

항 목	조 문	내 용
	§2518(5)	도청기간은 30일까지이며, 그 갱신은 신청에 의거 30일 한도로 인정될 수 있다.

2. 英 國

英國에서는 盜聽 그 자체는 수사당국의 오랜 慣行이었으며 그것을 규율하는 法律도 없었기 때문에 違法으로 되지도 않았다. 물론 個人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盜聽은 각종 관련법률에 의해 規律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5년 「盜聽法(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ct)」이 제정되면서 盜聽에 관하여 明文化가 이루어 졌다. 그 主要内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조 문	내 용
도청의 허가	§2	(1)국가의 안전 (2)중대범죄의 예방 및 수사 (3)연합왕국의 경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무장관은 도청을 허가할 수 있다.

항 목	조 문	내 용
허가대상범죄	§10(3)	<p>①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 →테러, 스파이활동, 주요파괴활동, 국방 및 외교정책지원</p> <p>②중대범죄 →전과가 없는 자로서 징역3년이상 의 형을 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위반행위 또는 그와 비교할 경우 중대성은 낮으나 대다수의 인간 이 관여하거나 또는 폭력의 사용을 우려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위반행 위</p> <p>③연합왕국의 경제안정보호 →경제에 있어서 특별히 의존하고 있는 물품의 공급을 위협하는 행위</p>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면책		<p>우편 또는 일반의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되는 통신을 의도적으로 도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경미범죄인 경우에는 약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에 처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p>
	§1	<p>①내무장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통신을 도청한 경우</p> <p>②도청이 허가된 통신이 어떤 자에 대해 또는 어떤 자로 부터 송신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p> <p>③우편 또는 공공의 전신업무에 취임하고 있는 자가 법률에 따른 도청을 실시한 경우</p>

항 목	조 문	내 용
		④1949년의 무선전신법에 의거하여 인가에 관한 목적 또는 무선전신의 방해방지 또는 조사목적으로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선전신을 도청한 경우 등에는 도청을 행하여도 유죄가 되지 않는다.
도청내용의 처리	§9	도청에 의해 얻은 사실은 당해기관만에 한정되며, 사인 또는 사적단체에 공개될 수 없다. 또한 그 정보는 수사의 수행을 돕기위한 것으로서만 이용되며, 증거로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획득을 가능케하는 것은 있어도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되지 않는다.
기 타	§7	동 법률의 운용상황만을 심사하는 재결기관을 두며, 그 구성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험있는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등으로 이루어진 5명으로 한다.
	§3	도청목적의 영장신청은 도청의 목적, 신청에 관련된 사실 및 사정을 서면으로 내무장관에게 제출한다. 신청이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내무장관이 서명한 영장이 발부된다. 영장에는 도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며, 1건마다 1통의 영장이 필요하다
	§4	영장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며, 그 갱신은 도청의 유효성이 인정된 때 일정한 범위내에 한해 인정된다.

항 목	조 문	내 용
	§8	수상은 도청의 실시상황등의 설명을 위하여 커미셔너 1인을 임명한다. 커미셔너는 매년 수상에 대해 도청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매년 수상이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국가의 안전, 중대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건은 수상은 커미셔너와 협의하여 의회의 보고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3. 獨 逸

獨逸에 있어서 盜聽은 基本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刑法에서도 도청, 녹음, 녹음의 公開 및 그 未遂를 처벌하고 있으며 私人相互間에 있어서 盜聽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수사·국가의 안전에 관한 盜聽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法律로서 「刑事訴訟法」과 1968년에 제정된 「信書·郵便 및 電氣通信의 秘密制限에 관한 法律(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이 있다. 前者는 주로 일반범죄수사를 위한 盜聽을 규정하고 있으며,⁵⁾ 後者는 국가의 안전등에 관한 盜聽을 규정하고 있다. 그

5) 刑事訴訟法 제100조(a)에서 규정하고 있는 盜聽이 허용되는 범죄로서는 ①平和에 대한 반역죄, 대역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犯罪, 스파이범죄 및 對外的 安全을 저해하는 범죄 ②國土防衛에 대한 범

러나 최근 獨逸에서는 公權力에 의한 盜聽은 「형사소송법」에 의하기 보다는 「信書·郵便 및 電氣通信의 秘密制限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이하 「信書·郵便 및 電氣通信의 秘密制限에 관한 法律」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조 문	내 용
허가대상범죄	§2	①평화에 대한 반란 또는 내란 ②민주적 법치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반국가적 행위 또는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④국토방위를 해치는 행위 ⑤연방공화국에 주류하는 독일이외의 북대서양조약가맹국 또는 베를린에 주류하는 3개국의 하나의 군대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도청의 신청·허가	§4·§9	연방헌법수호청, 각란트의 헌법수호국, 연방국방보안국 및 연방정보국은 도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방의 권한을 가지는 장관 또는 각란트의 최고행정청은 이 신청에 의거한 문서에 의해 통신비밀의 제한조치를

죄 ③독일연방에 駐留하는 독일이외의 북대서양조약가맹국군대의 安全을 저해하는 罪 또는 베를린에 駐留하는 3개국의 하나의 軍隊의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죄 ④刑法 제138조에 규정하는 謀殺罪, 고의살인죄, 통화위조죄, 강도죄, 강도적인 공갈죄, 略取誘拐, 납치죄, 공갈적인 幼兒誘拐罪, 부녀매매죄 및 공공위험죄 또는 공갈죄 등이다.

항 목	조 문	내 용
		명할 수 있다. 또한 연방의 권한을 가지는 장관은 독일에 대한 무력공격의 위험이 임박한 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방의회가 지명하는 5인의 연방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하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 우편 및 전기통신에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에 대한 제재	§10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기 타	§9(4)	담당연방장관은 하원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는 독립된 위원회에 매월 자기가 명한 제한조치에 관하여 보고한다. 독립위원회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이들 조치에 관하여 심사하여 승인할 수 없거나 필요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이 제기된 경우 연방장관은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5(3)	도청기간은 3개월이내로 한다. 또한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한 보고를 6개월 이내에 하원위원회에 보고한다.

4. 프랑스

프랑스憲法에는 통신의 비밀보호에 관하여 아무런 規定을 두고 있지 않음

나, 「刑法」·「刑事訴訟法」·「市民의 人權保障을 강화하는 法律」 등에서 私生活의 비밀침해로서 불법적인 盜聽 등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1991년 7월 10일에 일정한 경우에 盜聽을 인정하는 「電氣通信手段에 의한 通信의 秘密에 관한 法律(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을 制定하였다. 이하 그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조 문	내 용
허가대상	§2·§3	①중죄 및 경죄로 2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는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국가안보, 프랑스의 과학·경제잠재력의 기본요소에 대한 보호 ③조직적 테러와 범죄예방 ④군사집단의 재편성 또는 유지방지에 관련된 정보수집
도청의 신청·허가	§2	중죄 및 경죄로 2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심판사는 통신감시를 할 교신의 확인을 위한 기본요소, 통신감시요청의 원인이 된 범죄 및 통신감시기간이 기재된 문서로 도청을 허가할 수 있다.
	§4	안보상 이유에 대한 도청허가는 수상 또는 그의 특별위임을 받은 2인중 1인이 서면으로 정당하게 행한 결정에 의하여 승인되며 국방장관, 내무장관, 관세업무담당장관 또는 각 장관의 특별위임을 받은 자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서면제외에 의해 부여된다.

항 목	조 문	내 용
위반에 대한 제재	§25	비밀누설시에는 3월이상 5년이하의 금고 및 5천프랑이상 10만프랑이하의 벌금 통신감시기구설치, 통신방해·이용시에는 6월이상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천프랑이상 10만프랑이하의 벌금
도청내용의 처리	§2	사법권의 명령에 의한 도청시에는 예심판사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통신감시 및 녹음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녹음테이프는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지방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청구에 의해 이를 파기한다.
	§8 · §9 · §12	안보상의 목적에 의한 도청시에는 수상의 지시하에 일람표를 작성한다. 녹음테이프는 녹음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수상의 지시를 받아 이를 파기한다. 통신내용의 사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즉시 수상의 지시를 받아 이를 파기한다.
기 타	§13	안보를 위한 도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감시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안보를 위한 국가통신감시통제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규정에 위배하여 안보상의 통신감시를 허가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상에게 통신감시의 중단을 건의한다.

항 목	조 문	내 용
	§2·§6	<p>사법권의 명령에 의한 통신감시·녹음 및 전사는 4월이내에 이를 행하며 동일한 형식과 기간의 조건하에서 갱신할 수 있다.</p> <p>안보상의 이유로 인한 통신의 감시는 최고 4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동 허가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을 상실하며 동일한 형식과 기간의 조건에서만 이를 갱신할 수 있다.</p>

<附 錄>

<여·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의 주요내용 비교>

주요항목	여 당 안	야 당 안
법률의 명칭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도청의 정의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등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거나 또는 이를 채록하여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통신제한의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허가일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일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계획제출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 ◦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한 신청에 의해 검사가 법원에 허가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한 신청에 의해 검사가 법원에 허가청구

주요항목	여 당 안	야 당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청구서에는 필요한 통신제한 조치의 종류·대상·범위 및 기간과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청구서에는 필요한 제한조치의 종류, 대상, 범위, 기간과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서를 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서 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을 특정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을 특정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기간은 3개월초과 할 수 없으며,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허가대상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1. 형법 중 내란, 외환, 국교, 공안, 폭발물, 공무원의 직무, 도주 및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방화와 실화,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 음용수, 아편, 통화, 우가증권, 우표와 인지, 살인, 상해와 폭행, 체포와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정조, 권리행사방해,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장물 등의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1. 형법중 내란, 외환, 국교, 폭발물, 방화와 실화,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 음용수, 아편, 통화, 유가증권·우표와 인지, 살인, 체포와 감금, 약취와 유인, 정조, 절도와 강도에 관한 죄 2. 군형법중 반란, 이적, 지휘권남용, 지휘관의 항복과 도주, 수 소이탈, 항명, 살인죄

주요항목	여 당 안	야 당 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군형법 중 반란, 이적, 지휘권 남용, 지휘관의 항복과 도주, 수포이탈, 군무태만, 항명, 폭행·협박·상해와 살인, 군용물, 위령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1. 기타 범죄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실행되는 범죄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범죄 <p>°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인 경우의 통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마약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일부 범죄 4. 상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죄 <p>° 특수지역통신등에 관한 제한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의 쌍방당사자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주요항목	여 당 안	야 당 안
	<p>2.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외국기관 또는 외국단체 등간의 통신</p> <p>3.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자, 국제범죄집단이나 단체,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통신</p>	<p>2.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간의 통신</p> <p>3.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국제범죄집단 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지역에 있는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을 일방당사자로 하여 해당국가 또는 해당지역에서 발송하거나 수령하는 내국인과의 통신</p>
긴급통신제한 조치	<p>°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 가능, 긴급통신제한조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p> <p>° 국가인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가능, 통신제한조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함</p>	<p>°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가 가능, 긴급통신제한조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p>

주요항목	여 당 안	야 당 안
통신제한조치 내용의 처리	통신제한조치의 실시로 인하여 취득한 통신의 내용은 그 본래의 용도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p>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내용은 다음의 경우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상기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 경찰서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체신부장관은 통신제한조치의 개요를 대통령에 보고 함 ◦ 법원행정처장과 국방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에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통신에 대한 제한조치허가 현황에 대한 개요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회본회의 또는 관련상임위원회와 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 특정한 통신제한조치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체신부장관 또는 이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수 있음

주요항목	여 당 안	야 당 안
권리구제		<p>통신제한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허가요건의 흠결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해 피해배상 소송가능</p> <p>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벌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규정위반 →5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통신내용공개 및 누설, 취득정보의 목적외사용, 타인간의 대화비밀침해금지 위반 →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규정위반, 통신내용공개 및 누설, 불법도청을 위한 도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 또는 이를 위한 광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허위작성 및 집행, 불법행위에 의한 통신내용의 폭로 또는 공개, 특수지역통신등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위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장·자료의 미보존 및 불법폐기·은닉 →10년이하의 징역 ◦ 감청설비에 관한 인가대장의 미작성·미비치, 체신관서 기타 통신업무취급단체의 직원의 위반행위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懸案分析 93-3 主要國家의 盜聽防止法制

1993년 7월 20일 印刷

1993년 7월 25일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韓國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값 1,200원

